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63
----------	------

제출년월일 : 2010. 6.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이유

- 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 등 정비

□ 주요내용

- 가.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함
(안 제1조, 제7조, 제8조)
- 나.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명확히 함.
(안 제4조, 제5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 등 정비

□ 참고자료

-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를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로 하고,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기금”을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기금출납명령관은 식품위생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은 식품진흥기금담당국장”으로 하고, “식품위생업무담당사무관”을 “식품진흥기금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외의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를 “사무를 처리할”로 하며, “식품위생업무담당사무관”을 “식품진흥기금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의 제목“(용자사업)”을“(용자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의한”을“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용자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중“시에서 법 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u>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u>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한다.</u></p> <p>②~③ (생략)</p> <p>제3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하여는 <u>인천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u></p> <p>제4조(회계공무원) ① (생략) ② <u>기금출납명령관은 식품위생담당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u></p>	<p>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p> <p>제1조(목적) -----<u>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u> -----</p> <p>----- ----- ----- -----<u>인천광역시</u> <u>식품진흥기금</u>-----</p> <p>----- ----- -----</p> <p>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u>인천광역시</u> <u>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 -----</p> <p>-----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 -----<u>「인천광역시재무회계 규칙」</u> -----</p> <p>제4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기금운용관은 식품진흥기금담당국장</u> ----- <u>식품진흥기금담당사무관</u>-----</p>

현행	개정안
<p>제5조(기금운용·관리위원회의 구성) ①~③ (생략)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u>식품위생업무담당사무관</u>이 된다. ⑤ (생략)</p>	<p>제5조(기금운용·관리위원회의 구성) ①~③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④ -----<u>사무를 처리할</u> ----- -----<u>식품진흥</u> <u>기금담당사무관</u>----- ⑤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생략) 1. ~ 2. (생략) 3. <u>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u> ② (생략)</p>	<p>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u> 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용자사업) ① 시장은 <u>법 제71조 제3항제1호에 의한</u>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과 <u>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u>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시행령 <u>제42조제1항2의4호에 의한</u>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u>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한 용자사업</u>을 할 수 있다. <u><신설></u></p>	<p>제7조(용자사업 등) ① --- <u>식품위생법(이라 “법”이라 한다)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u> ----- ----- ----- ② 시장은 법 시행령 <u>제6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u>할 수 있다. <u>③ 용자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제8조(용자대상) 기금의 용자대상은 <u>시에서 법 시행령 제7조의</u> 영업을 하는 자 중 <u>시장 또는 군수·구청장</u> (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u>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u>로 한다.</p>	<p>제8조(용자대상) ----- -----<u>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u> ----- ----- -----</p>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

<p>관계법령</p>	<p>□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영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관계법령</p>	<p>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7.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용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용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떡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p>
<p>관련법규 정비대상</p>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사항 없음”</p>
<p>관련자료</p>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사항 없음”</p>